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2022. 11.

특 허 제 도 과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은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8. 3. ~ 9. 1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32973호

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3.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(특허청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기간 을 정하여 공고하는 특허출원으로 한정한다)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우선심사의 대상) ① 법 제	제9조(우선심사의 대상) ①
61조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특허출원"이란 다음 각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	
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	
출원을 말한다.	
1. ~ 2의2. (생 략)	1. ~ 2의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2의3.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
	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
	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(특허
	청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
	대상과 신청 기간을 정하여
	공고하는 특허출원으로 한정
	<u>한다)</u>
3. ~ 12. (생 략)	3. ~ 1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특허청 특허제도과

연 락 처

(042) 481 - 8153

WWW.PATENTSCHOOL.CO.KR

변리사합책생의

무엇이는 물어보세요

2022년 59회 변리사합격자 질의응답

변리사 시험 수험생들의 고민완전해결 합격자설명회에서 해결해드립니다.

만.관.부

합격자설명회일정 : 추후공지

〈 질의응답 참여방법 〉 궁금하신점을 변리사스쿨 QnA 또는 변리사스쿨 카카오톡채널로 남겨주시면 질문을 모아서 설명회에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.

